

2026년 제8회 안양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

「2026년 제8회 안양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.

2026년 10월 26일
안양시인사위원회위원장

1. 임용분야 및 인원

임용분야	임용직급 (근무시간)	채용 인원	계약 기간	담 당 직 무
건 축 구 조	지방시간선택제 임 기 제 나 급 (주35시간)	1명	2년	○ 건축 인·허가 단계시 기술적 검토 (구조기준에 따른 구조계산서, 안전확인서, 도면, 적합성 검토·확인) ○ 건축공사장 안전점검(분기별) 및 감리실태 지도점검 등 ○ 소규모 노후건축물 기술적 검토 및 안전 점검 ○ 기타 건축 전반에 대한 자문 ○ 그 밖에 부서장이 분장하는 사무
공 동 주 택 관 리	지방시설주사보 (일반임기제) (주40시간)	1명	2년	○ 공동주택관리 민원상담 및 처리 ○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관리규약 신고 관리 ○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관련 민원처리 ○ 공동주택관리 관계자 등 교육 운영 ○ 그 밖에 부서장이 분장하는 사무
도 시 재 생	지방시간선택제 임 기 제 다 급 (주35시간)	1명	2년	○ 집수리 지원사업 추진 ▶ 지원대상 평가 및 선정, 공사비 정산 및 보조금 지급 등 ○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 등 도 공모사업 추진 ○ 도시재생 거점시설 운영 및 관리 ○ 기타 도시재생 지원에 관한 사항 ○ 그 밖에 부서장이 분장하는 사무
치매안심센터 간 호 사	지방시간선택제 임 기 제 라 급 (주35시간)	1명	2년	○ 치매안심센터 사업 추진 및 치매통합관리서비스 제공 ▶ 상담·등록관리 등 치매안심센터 업무 전반 ▶ 치매 조기검진 및 치매치료비 지원 등 ▶ 치매가족 및 보호자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▶ 치매인식개선 및 홍보사업, 인지자극 프로그램 운영 ▶ 맞춤형사례관리 및 자원연계 ▶ 지역특화사업 및 공공후견사업 운영 ○ 그 밖에 부서장이 분장하는 사무

임용분야	임용직급 (근무시간)	채용 인원	계약 기간	담 당 직 무
영 상 기 획 · 촬 영 · 편 집	지방시간선택제 임 기 제 마 급 (주35시간)	1명	2년	○ 영상활용 시정홍보 추진 ○ 영상 기획, 시나리오 구성, 촬영 및 편집 등 제작 ○ 영상콘텐츠 모니터링 및 분석 등 ○ 그 밖에 부서장이 분장하는 사무
지하수검침원	지방시간선택제 임 기 제 마 급 (주35시간)	1명	2년	○ 지하수, 지하수이용부담금에 관한 업무 ▶ 부과·징수(계획·결과 보고 및 운용실적), 체납고지서 및 안내문 발송 ▶ 체납처분(독촉, 재산압류 및 해제, 고시공고, 결손처리) ▶ 사용료 감면 등록 처리 ○ 지하수 사용량 검침에 관한 업무 ▶ 인정검침, 보조검침, 원격검침(수자원공사 설치 포함) ▶ 검침 민원 및 이의신청 처리(분납신청, 수용가 변경 등) ○ 지하수 관리카드 검침구역 신규 및 변경 ▶ 지하수 원격검침기 및 단말기 AS처리 및 관리 ○ 그 밖에 부서장이 분장하는 사무
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공매	지방시간선택제 임 기 제 마 급 (주35시간)	1명	2년	○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(주·야간) ○ 영치 번호판 관리 (보관, 반환 등), 체납차량 강제인도 및 공매 ○ 그 밖에 부서장이 분장하는 사무
행정업무지원 (장애인전형)	지방시간선택제 임 기 제 마 급 (주35시간)	1명	1년	○ 부동산실거래 신고에 대한 자금조달계획 및 증빙자료 검토 ○ 부동산 실거래 신고 처리(승인,보완,반려) ○ 부동산거래 검인 검토 및 처리 ○ 토지거래계약 허가 업무 ▶ 허가 서류 검토 및 허가증 교부 ▶ 허가목적(실거주 여부) 현장 확인 등 ○ 행정, 민원업무 및 부서 사무업무 수행 ○ 그 밖에 부서장이 분장하는 사무

※ 채용기간은 근무실적 및 사업의 필요성에 따라 총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

2. 법령근거

-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
-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 지침 및 안양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
-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
-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

3. 응시자격

○ 기본요건 (기준일 :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)

- ▶ 응시연령 : 18세 이상
- ▶ 주소지 · 성별제한 없음,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
- ▶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(결격사유)에 해당되지 아니하고,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및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
- ▶ 치매안심센터 간호사 응시자의 경우 「노인복지법」 제39조의17(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)에 의거 노인학대 관련 범죄로 인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판결로 취업제한 명령을 받지 않아야함.

〈 지방공무원법 제31조 (결격사유) 〉

1. 피성년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3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4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- 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6의3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- 나.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
 - 다.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
- 6의4. 미성년자에 대하여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- 가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된 날
 - 나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
 - 다.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
 - 라.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
 - 마.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
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〈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 [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] 〉

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,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.

1.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
2.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
3. 통신기기,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
4.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
5. 병역, 가점,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·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
- 5의2.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
6.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

③ 이 영에 의하지 않은 공무원의 임용시험 또는 국가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하여 응시 자격이 정지 중에 있는 사람은 그 기간 중 이 영에 따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.

〈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[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] 〉

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

1.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, 파면 또는 해임된 자
2.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 (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)

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.

1. 공공기관
2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
3.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
4.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·단체

〈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[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] 〉

① 법원은 노인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(약식명령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·면제된 날(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)부터 일정기간(이하 “취업제한기간”이라 한다)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(이하 “노인관련기관”이라 한다)을 운영하거나 노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(이하 “취업제한명령”이라 한다)을 판결과 동시에 선고(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를 말한다) 하여야 한다. 다만,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,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3. 「치매관리법」 제17조에 따른 치매안심센터

○ **임용분야 세부 응시자격 요건 (기준일 :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)**

▶ 아래 임용분야에 해당하는 세부 응시자격 요건을 갖춘 자

채용분야·직급	자 격 기 준	
건축구조 〈도시주택국 건축과〉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나급	■ 아래의 ①자격증 요건 또는 ②경력요건을 충족하는 자	
	① 자격증 요건	○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건축구조기술사 또는 건축시공기술사 자격 소지자
	② 경력 요건	○ 「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」 별표1에 따른 건설기술인 중 건축구조 분야 고급 기술인 이상의 자격기준을 갖춘 자로, 아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련 분야 실무경력¹⁾ 이 있는 사람 1. [민간경력]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¹⁾ 이 있는 사람 2. [민간경력]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¹⁾ 이 있는 사람 3. [공무원경력] 7급 또는 7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¹⁾ 이 있는 사람
		【 관련분야 실무경력¹⁾】 ▶ 설계·구조·시공 등 건축 관련 업무경력
공동주택관리 〈주택과〉 지방시설주사보 (일반임기제)	경력 요건	○ 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67조에 따른 주택관리사 자격증 소지자로, 아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련분야 실무경력²⁾ 이 있는 사람 1. [민간경력]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²⁾ 이 있는 사람 2. [민간경력]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²⁾ 이 있는 사람 3. [공무원경력]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²⁾ 이 있는 사람
		【 관련분야 실무경력²⁾】 ▶ 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‘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’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되어 업무를 수행한 경력 【우대사항】 ▶ 관련학과(법학과, 건축학(공학)과, 회계학과, 경영학과, 세무학과, 주택관리 관련학과) 학사 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

채용분야·직급	자 격 기 준	
도시재생 〈도시혁신과〉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다급	경력 요건	○ 아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련분야 실무경력³⁾이 있는 사람 1. [민간경력]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³⁾이 있는 사람 2. [민간경력]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³⁾이 있는 사람 3. [공무원경력]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³⁾이 있는 사람 【 관련분야 실무경력³⁾ 】 ▶ 국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, 도시재생 관련업체 등에서 도시재생 분야 담당 및 프로젝트 실무경력
치매안심센터 간호사 〈만안구보건소 건강증진과〉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	경력 요건	○ 아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련분야 실무경력⁴⁾이 있는 사람 1. [민간경력]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⁴⁾이 있는 사람 2. [민간경력]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⁴⁾이 있는 사람 3. [공무원경력] 9급 또는 9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⁴⁾이 있는 사람 【 관련분야 실무경력⁴⁾ 】 ▶ 간호사 면허 취득 후 「의료법」에 따른 의료기관, 「지역보건법」에 따른 지역보건 의료기관 및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른 사회복지시설, 또는 「노인복지법」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등에서 간호사로 근무한 경력 【 우대사항 】 ▶ 치매관련 업무 종사 또는 치매전문교육 이수자 ▶ 운전면허(2종 보통 이상) 소지자로 운전이 능숙한 자 ▶ 정신전문간호사 자격증 소지자
영상 기획· 촬영·편집 〈홍보기획관〉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	경력 요건	○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⁵⁾이 있는 사람 【 관련분야 실무경력⁵⁾ 】 ▶ 국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, 언론사, 민간기관 등에서의 홍보용 영상 기획·촬영·편집 관련 실무 경력 * 강의경력, 본인이 개인사업자이거나 개인사업자에 소속된 경력은 불인정함 【 우대사항 】 ▶ 영상 편집·촬영 관련 자격증 소지자 ▶ 관련 분야 공모전 수상 경력 보유자 ▶ 영상 기획·촬영·편집 관련 학과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

채용분야·직급	자 격 기 준	
지하수검침원 〈하수과〉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	경력 요건	○ 1년 이상 <u>관련분야 실무경력⁶⁾</u> 이 있는 사람 【 관련분야 실무경력⁶⁾ 】 ▶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 검침업무 경력 【우대사항】 ▶ 워드프로세서 자격증 또는 컴퓨터 활용능력 자격증 소지자 ▶ 운전면허 자격 소지자
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공매 〈동안구 세무과〉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	경력 요건	○ 1년 이상 <u>관련분야 실무경력⁷⁾</u> 이 있는 사람 【 관련분야 실무경력⁷⁾ 】 ▶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업무 경력 【우대사항】 ▶ 운전면허 보통 2종 이상 소지자 ▶ 컴퓨터 활용능력 자격증 소지자 ※ [참고] 응시자 필요역량 및 임용 시 근무시간 ▶ <u>야간근무 및 야간운전이 능숙하여</u> 현장업무가 가능하여야 함. ▶ 신체 건강하고 주·야간 근무가 가능하여야 함. - 주간: 9시~18시 / 야간: 18시~24시 ▶ 근무시간: 주 5일제(월~목: 9시~18시, 금: 9시~12시) ※ 근무방법 및 근무시간은 근무명령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
행정업무 지원 (장애인전형) 〈동안구 민원봉사과〉 지방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	경력 요건	○ <u>지원요건⁸⁾</u> 을 충족하며, 1년 이상 <u>관련분야 실무경력⁹⁾</u> 이 있는 사람 【지원요건⁸⁾】 ▶ 「장애인복지법 시행령」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또는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【 관련분야 실무경력⁹⁾ 】 ▶ 국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, 법인 및 민간기업에서 행정, 사무, 민원업무, 공공일자리사업 분야 행정업무 보조 등 일반행정 실무경력 [※ 비사무직 업무(현장·제조·노무업무)는 실무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] 【우대사항】 ▶ 전산관련 자격증 소지자(컴퓨터활용능력, 워드프로세서 등) ▶ 컴퓨터 문서작성(한글·엑셀 프로그램 활용) 및 컴퓨터 활용이 가능한 자

세부 응시자격요건 유의사항

■ 공통 유의사항

- 1) 자격증의 유효기간을 경과하는 등 효력을 상실한 자격증은 인정하지 않음(자격증 정지 또는 정지 예정자 포함)
- 2) 관련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 : **경력증명서 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, 경력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경력요건이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.**
- 3) 주 40시간 미만 근무 시 경력증명서에 주당 근무시간이 명기되어야 하며, 근무기간 산정 시 시간 할 계산됨.

■ 경력요건 응시 유의사항 (건축구조 ①자격증요건 응시자는 미적용)

- 1) 경력 계산 시 ‘민간경력’과 ‘공무원경력’을 합산할 수 없음
(예시) 관련분야 ‘공무원(임용예정계급상당) 경력 1년’과 ‘민간경력 1년’을 합산하여 ‘관련분야 경력 2년’으로 인정되지 않음.
- 2) 관련분야 실무경력: 최종 관련경력을 기준으로 일반임기제 응시분야의 경우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(중증장애인 응시의 경우 5년)이 경과하지 않아야 하며, 시간선택제임기제 응시분야의 경우 10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.
- 3) 「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」 및 「안양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」에 따라 일반(시간선택제) 임기제공무원의 상위 계급에 규정된 응시요건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계급의 응시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.

4. 시험방법

○ 1차 시험(서류전형) : 응시자격 요건의 적합성(경력, 자격요건) 심사

- ⇒ 응시자의 자격·경력 등이 공고된 응시자격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및 담당 예정 직무의 수행적합 여부, 경력 관련 정도 등을 서면심사하여 합격자 결정
- ⇒ 단, 응시인원이 임용예정 직위별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를 초과할 경우,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범위 내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(동점자 발생으로 서류전형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한 경우,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처리)

○ 2차 시험(면접시험) : 1차시험(서류전형) 합격자에 한함

- ⇒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, 전문지식과 응용능력,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, 예의·품행 및 성실성, 창의력·의지력 및 발전가능성을 상·중·하로 종합평가
- ⇒ 합격자결정 :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결정. 단,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‘하’ (미흡)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‘하’ (미흡)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함.

※ 추가합격자 결정

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, 합격 취소,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임용되지 못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결과 불합격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.

5. 원서접수 및 시험일정

○ 접수기간 : 2026. 11. 6.(금) ~ 11. 10.(화) < 주말제외 3일간 >

○ 접 수 처 : 안양시청 총무과(3층) 인사팀

○ 접수방법 :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

▶ 방문접수

- 접수시간 : 근무시간(09:00~18:00) 내 접수, 중식시간(12:00~13:00) 제외

※ 접수 마감일 18:00 이후에는 원서접수 불가

- 응시원서 제출 前 안양시청 민원실 13번창구에서 해당 증지 수수료 납부

※ 응시수수료 : 안양시 수입증지 첨부 [나급·주사보·다급: 7천원, 라·마급: 5천원]

※ 응시원서 제출 당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증지 수수료가 면제됩니다.

해당되는 경우 안양시청 민원실 13번 창구에서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면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.

①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(증명서 지참 필요)

②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지원대상자(증명서 지참 필요)

③ 「장애인연금법」에 따른 수급자(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지참 필요)

④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(가족관계증명서 지참 필요)

- 원서 접수 당일 응시를 취소하면 응시수수료 반환 가능(방문접수만 해당)

- 타인이 응시원서 제출 가능

▶ 등기우편 접수

- 우편주소 : 우)14053 /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5, 안양시청 총무과 인사팀
- 원서접수 마감일 18시까지 우편 소인에 한해 유효함 ※ 택배 및 퀵서비스 접수 불가
- 응시분야 직급의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의 우편통상환을 우체국에서 구입·동봉
※ 대한민국 '정부수입인지' 사용불가, 우편통상환은 금융업무로 우체국 마감시간 유의
- 우편봉투 겉면에 '2026년 제00회 안양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원서' 표기
- 우편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한 경우 응시표는 서류전형 전까지 이메일로 회신 예정
 ※ 이메일 주소 반드시 기재 요망
- 우편접수 시 기재서류 누락·미비 등에 대하여는 응시자 본인의 책임임
- 미비서류에 대한 보완은 접수마감일 18시까지 가능. 접수마감일 이후 우편도착 서류에 대해서는 보완 불가

○ 시험일정 : 안양시 홈페이지 (www.anyang.go.kr) 공고

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공고	면접시험 시행 예정일		최종합격자 발 표
	일 시	장 소	
2026. 11. 13(금) 전·후	2026. 11. 18(수) ~ 11. 19.(목)	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고	2026. 11. 23(월) 전·후

※ 「면접시험 시행 예정일」은 응시자격 확인을 위한 기준일이며, 구체적인 응시분야 시험일은 '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' 공고문을 통해 확인 요망

※ 시험일정은 서류 접수자 개인별 통지하지 않으며,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험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안양시청 홈페이지(www.anyang.go.kr) 고시/공고란(채용공고)에서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

6. 제출서류 ※ 원서접수 시 스테이플러, 띠지 등 사용 금지

○ 응시원서 1부 (별지서식 1호 -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작성)

▶ 응시수수료 : 안양시 수입증지 첨부

※ 안양시청 민원실 13번 창구에서 구입 [나급·주사보·다급: 7천원, 라·마급: 5천원]

○ 이력서 1부 (별지서식 2호 -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작성)

○ 자기소개서 1부 (별지서식 3호 -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작성)

○ 직무수행계획서 1부 (별지서식 4호)

○ 서류전형 제출서류 1부 (별지서식 5호 -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작성)

○ 서류전형 자격요건 본인의견서 1부 (별지서식 6호 -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응시자 본인이 해당하는 곳에 표시하여 제출, 자격요건 중복표시 가능)

○ 영상 촬영 포트폴리오 1부 (채용분야 중 영상 기획·촬영·편집 분야 응시자 필수 제출)

- ▶ 제출내용 : 본인이 직접 기획·제작·편집한 영상 콘텐츠 1편
(1분 이내 / 형식 자유 / mp4 파일)
- ▶ 제출방법 : 채용담당자 이메일로 제출 (bde2163@korea.kr)
- ▶ 제출기간 : 응시원서 접수기간 (2026. 11. 6. ~ 11. 10. 18:00까지)
- ▶ 유의사항
 - 응시원서 제출기간 이후 제출 및 변경 불가
 - 영상 내 본인의 신상과 관련한 정보 포함 금지

○ 해당분야 응시요건 관련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각 1부

※ 경력(재직)증명서 제출 관련 유의사항

- ▶ 경력(재직)증명서는 발행기관 직인 및 발급담당자 날인, 연락처를 필히 기재
- ▶ 제출된 재직 또는 경력증명서로 해당 분야 인정 근무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 전형 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, 본인이 증명서 발급 부서에서 해당 분야임을 확인받아 제출하여야 함. [근무기간, 근무형태(전일·시간제), 직위(급), 담당업무 반드시 기재]
- ▶ 회사 경력증명서 양식 상 구체적인 업무 및 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[별지서식 7호] 경력 증명서 양식으로 제출(인사담당자 작성, 기관 관인 날인 필수)하거나 경력증명서 상에 인사담당자가 내용 기재 및 자필 확인 또는 업무분장표 등의 증명서류 추가 제출 가능
- ▶ 시간제 근무의 경우 주 근무시간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,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경력의 일부를 인정(ex. 4년간 주 20시간 시간제 근무 시 근무경력 2년으로 인정)
- ▶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 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며, 프리랜서, 자원봉사, 시민단체 활동 등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반드시 보수내역 및 주당근무시간 등 입증자료를 제출하여야 함.
- ▶ 이력서 상의 경력은 재직 또는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,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으며, 추가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.
- ▶ 기관의 폐업으로 경력증명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 ①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(근로계약서, 인사기록카드, 업무분장내역 등)로 보완할 수 있으며, 이때 검증을 위해 ②폐업 사실증명서, ③4대보험 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, ④소득금액증명원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(①~④ 서류 모두 제출해야 함)
 - ※ 증빙서류를 통해 관련분야 근무여부 판단이 모호할 시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.

※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 발급 방법(국세청 홈택스)

- ①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아는 경우
 - 국세청 홈택스(<https://www.hometax.go.kr/>) 접속 → 메뉴에서 '증명·등록·신청·사업자현황' 클릭 → '사실확인 후 발급 증명' 클릭 → '폐업자에 대한 업종등의 정보내역'에서 발급
- ②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
 - 국세청 홈택스(<https://www.hometax.go.kr/>) 접속 → 메뉴에서 '증명·등록·신청·사업자현황' 클릭 → '즉시발급 증명' 클릭 → '소득금액증명' 클릭 → 폐업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 확인
 - 이하 과정은 ①과 동일 <관련 문의 : 국세청 (☎126)>

- 국민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보험자격이력 내역서 1부
 - ▶ 국민건강보험공단(<http://www.nhis.or.kr>), 정부24(<http://www.gov.kr>)에서 발급 가능
- 학사(전문학사 포함)학위 이상 전체 졸업(학위수여)증명서 각 1부 **(해당자 제출)**
 - ▶ 박사 또는 석사학위 보유자는 학사 학위증명서부터 모두 제출
 - ▶ 고졸자는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제출
 - ▶ 공동주택관리, 영상 기획·촬영·편집 응시분야 학위 우대사항 중 학과(학위) 명칭이 공고문과 상이한 경우 동일계통학과 증명서 제출 (별지서식 8호-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작성)
- 관련분야 면허증 또는 자격증 사본 1부 ※ 응시원서 제출 시 원본지참 제시 **(해당자만 제출)**
 - ▶ 면접시험일 기준으로 유효기간을 경과하는 등 효력을 상실한 자격증은 인정하지 않음.
- 장애인증명서, 중증장애인확인서, 국가유공자확인서 중 택 1부 **(장애인전형 응시자 제출)**
 - ▶ 증명서는 시험 공고일(2026. 10. 26.) 이후 발급분으로 제출
- 관련분야 연구실적 목록 등 **(해당자만 제출)**
 - ▶ 연구 논문 등의 경우에는 반드시 1매 이내의 요약서 첨부
- 외국어능력, 각종 대회 수상, 상훈 등 증빙자료 **(해당자만 제출)**
- 자원봉사활동 자기기술서 및 확인서 1부 **(해당자만 제출)**
(별지서식 9호 -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작성) ※ 공고일 기준 최근 2년간
- 자격요건 검증 동의서(개인정보제공·이용 동의서,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포함) 1부
(별지서식 10호 -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작성)
 - ※ 외국어로 된 증명자료(학력, 경력증명서 등)의 경우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공증하여 제출하여야 함.

7. 보수수준 및 복무

- 보수수준 : 신규 임기제공무원의 경우 **직급별 연봉하한액**(「지방공무원 보수규정」 별표13)을 **원칙**으로 함.

연번	임용예정분야	임용직급(근무시간)	하 한 액
1	건축구조	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나급(주35시간)	50,495천원
2	공동주택관리	일반임기제 지방시설주사보(주40시간)	50,272천원
3	도시재생	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(주35시간)	43,988천원
4	치매안심센터 간호사	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(주35시간)	38,759천원
5	영상 기획·촬영·편집	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(주35시간)	25,837천원
6	지하수 검침원	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(주35시간)	25,837천원
7	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공매	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(주35시간)	25,837천원
8	행정업무지원(장애인전형)	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(주35시간)	25,837천원

※ **연봉외 수당** : 가족수당, 정액급식비, 직급보조비 등

※ 「지방공무원 보수규정」 제35조제3항 규정에 따라 인력확보에 지장이 없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연봉책정 가능

※ 「고용보험법」 제10조 제1항 제3호 및 「고용보험법 시행령」 제3조의2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(실업급여)에 가입희망 시 가입 가능(단, 최초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)

- 복무사항 : 지방공무원법 및 안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의 규정을 준용함.

8. 기타사항

- 안양시인사위원회에서 동일일자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는 복수로 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.
-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에 따라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·변조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준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,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.

- 관련분야 근무경력 인정 여부는 응시자가 제출한 증빙서류(경력 또는 재직증명서 등)을 기준으로 서류전형에서 심사·결정하며, 경력증명서 등을 제출하지 않음에 따른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.
-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 철저히 검토한 후 출원하시기 바라며
응시서류의 누락·미비, 응시원서 등의 허위 기재 또는 기재착오, 자격 미비자의 응시 또는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.
 - ▶ 각종 구비서류는 반드시 원서접수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.
 - ▶ 서류보완은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만 가능하고, 접수기간 이후에는 일절 받지 않습니다.
 - ▶ 방문접수의 경우 접수마감일 18:00 이후에는 원서접수가 불가합니다.
-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(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) 해당분야는 원서접수일, 시험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.
-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,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, 경력·자격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- 시험 관련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,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 일정과 합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.
- 원본으로 제출받은 서류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반환해 드립니다.
-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금회 시험에 한하여 면접응시자 본인의 면접점수(결과)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할 경우 평가결과를 종합한 상·중·하 개수를 공개합니다.
 - ▶ 과거 치렀던 시험의 면접점수 공개는 불가합니다.
 - ▶ 청구자격은 응시자 본인에 한하며, 시험운영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비공개할 수 있습니다.
-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자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, 「공무원 연금법」 제50조에 따라 재직기간 중 해당 연금의 지급이 정지될 수 있으니 사전에 연금공단 등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○ 본 공고내용은 시행기관의 사정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,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- ▶ 채용절차 관련 문의 : 총무과 인사팀 (☎031-8045-2118)
- ▶ 담당직무 관련 문의

채 용 분 야	부 서 명	전 화 번 호
건 축 구 조	건 축 과	☎ 031-8045-2774
공 동 주 택 관 리	주 택 과	☎ 031-8045-5274
도 시 재 생	도 시 혁 신 과	☎ 031-8045-2122
치매안심센터 간호사	만 안 구 보 건 소 건 강 증 진 과	☎ 031-8045-3038
영상 기획·촬영·편집	홍 보 기 획 관	☎ 031-8045-5501
지 하 수 검 침 원	하 수 과	☎ 031-8045-2454
체 납 차 량 번 호 판 영 치 및 공 매	동 안 구 세 무 과	☎ 031-8045-4299
행 정 업 무 지 원 (장 애 인 전 형)	동안구 민원봉사과	☎ 031-8045-4352

직무 기술서

□ 건축구조

임용예정부서	임용예정직급	선발예정인원	계약기간
도시주택국 건축과	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나급	1명	2년

주요업무	○ 건축 인·허가 단계시 기술적 검토 (구조기준에 따른 구조계산서, 안전확인서, 도면, 적합성 검토·확인) ○ 건축공사장 안전점검(분기별) 및 감리실태 지도점검 등 ○ 소규모 노후건축물 기술적 검토 및 안전 점검 ○ 기타 건축 전반에 대한 자문 ○ 그 밖에 부서장이 분장하는 사무
------	--

필요역량	○ 공통역량: 공직윤리, 공직의식, 고객지향마인드 ○ 직급별 역량: 상황인식·판단력, 기획력·팀워크지향, 의사소통능력·조정능력 등 ○ 직렬별 역량: 창의력, 기획력, 분석력, 전략적 사고 등
------	--

필요지식	○ 건축물 구조·시공 안전성 확인을 위한 건축물 설계 및 안전진단 관련 지식 ○ 건축물 붕괴 위험 감지 및 보수보강 대책 제시를 위한 건축구조, 설계, 시공 분야의 전반적 지식
------	---

응 시 자 격 요 건	■ 아래의 ①자격증 요건 또는 ②경력요건을 충족하는 자	
	①자격증요건	○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건축구조기술사 또는 건축시공기술사
	②경력요건	○ 「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」 별표1에 따른 건설기술인 중 건축구조 분야 고급 기술인 이상의 자격기준을 갖춘 자로, 아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<u>관련 분야 실무경력</u>이 있는 사람 1. [민간경력]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<u>관련분야 실무경력</u>이 있는 사람 2. [민간경력] 5년 이상 <u>관련분야 실무경력</u>이 있는 사람 3. [공무원경력] 7급 또는 7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<u>관련분야 실무경력</u>이 있는 사람 【 관련분야 실무경력 】 ▶ 설계·구조·시공 등 건축 관련 업무경력

□ 공동주택관리

임용예정부서	임용예정직급	선발예정인원	계약기간
주택과	지방시설주사보(일반임기제)	1명	2년

주요업무	○ 공동주택관리 민원상담 및 처리 ○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및 관리규약 신고 관리 ○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관련 민원처리 ○ 공동주택관리 관계자 등 교육 운영 ○ 그 밖에 부서장이 분장하는 사무
------	--

필요역량	○ 공통역량: 공직윤리, 공직의식, 고객지향마인드 ○ 직급별 역량: 상황인식·판단력, 기획력·팀워크지향, 의사소통능력·조정능력 등 ○ 직렬별 역량: 창의력, 기획력, 분석력, 전략적 사고 등
------	--

필요지식	○ 공동주택 운영·관리 등에 대한 전문적 이해와 경험 ○ 공동주택관리법 등 관련 법률 등 전문지식 ○ 공동주택 관리 실무에 대한 전문적 이해와 경험 ○ 공무원의 기본자세 및 종합적인 판단 능력과 책임감 등
------	---

응시자 자격요건	경력요건	○ 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67조에 따른 주택관리사 자격증 소지자로, 아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<u>관련분야 실무경력</u>이 있는 사람 1. [민간경력]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<u>관련분야 실무경력</u>이 있는 사람 2. [민간경력] 3년 이상 <u>관련분야 실무경력</u>이 있는 사람 3. [공무원경력]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<u>관련분야 실무경력</u>이 있는 사람 【 관련분야 실무경력 】 ▶ 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‘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’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되어 업무를 수행한 경력
	우대요건	○ 관련학과(법학과, 건축학(공학)과, 회계학과, 경영학과, 세무학과, 주택관리 관련학과) 학사 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

□ 도시재생

임용예정부서	임용예정직급	선발예정인원	계약기간
도시혁신과	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	1명	2년

주요업무	○ 집수리 지원사업 추진 ▶ 지원대상 평가 및 선정 ▶ 공사비 정산 및 보조금 지급 등 ○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 등 도 공모사업 추진 ○ 도시재생 거점시설 운영 및 관리 ○ 기타 도시재생 지원에 관한 사항 ○ 그 밖에 부서장이 분장하는 사무
------	--

필요역량	○ 공통역량: 공직윤리, 공직의식, 고객지향마인드 ○ 직급별 역량: 상황인식·판단력, 기획력·팀워크지향, 의사소통능력·조정능력 등 ○ 직렬별 역량: 창의력, 기획력, 분석력, 전략적 사고 등
------	--

필요지식	○ 도시재생 전문가로서 제도 및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 ○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다양한 사례와 경험 ○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공직윤리에 대한 지식 ○ 그 밖에 다양한 상황에 대한 대처능력
------	---

응시자격요건	경력요건 ○ 아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1. [민간경력]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. [민간경력]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. [공무원경력]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【 관련분야 실무경력 】 ▶ 국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, 도시재생 관련업체 등에서 도시재생 분야 담당 및 프로젝트 실무경력
--------	---

□ 치매안심센터 간호사

임용예정부서	임용예정직급	선발예정인원	계약기간
만안구보건소 건강증진과	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	1명	2년

주요업무	○ 치매안심센터 사업 추진 및 치매통합관리서비스 제공 ▶ 상담·등록관리 등 치매안심센터 업무 전반 ▶ 치매 조기검진 및 치매치료비 지원 등 ▶ 치매가족 및 보호자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▶ 치매인식개선 및 홍보사업, 인지자극 프로그램 운영 ▶ 맞춤형사례관리 및 자원연계 ▶ 지역특화사업 및 공공후견사업 운영 ○ 그 밖에 부서가장이 분장하는 사무
------	--

필요역량	○ (공통 역량) 공직윤리(공정성, 청렴성), 공직의식(책임감, 사명감), 고객지향 마인드(공복의식) ○ (직급별 역량) 상황인식/판단력, 기획력·팀워크지향, 의사소통능력·조정능력 ○ (직렬별 역량) 분석력, 전략적 사고력, 창의력
------	--

필요지식	○ 임상 및 보건의료 경험을 통한 치매와 노인간호 관련 전문지식 ○ 치매관리사업의 기획·추진,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지식 ○ 치매환자 및 보호자의 특성에 대한 이해와 상담·사례관리에 관한 지식 ○ 치매 관련 교육 및 인지강화 프로그램의 기획·운영에 관한 지식 ○ 「치매관리법」 등 치매관리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 및 해석·적용에 관한 지식 ○ 치매지원서비스 및 지역사회 자원 연계·협력체계에 관한 지식
------	---

응시자격요건	○ 아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1. [민간경력]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<u>관련분야 실무경력</u>이 있는 사람 2. [민간경력] 2년 이상 <u>관련분야 실무경력</u>이 있는 사람 3. [공무원경력] 9급 또는 9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<u>관련분야 실무경력</u>이 있는 사람 【 관련분야 실무경력 】 ▶ 간호사 면허 취득 후 「의료법」에 따른 의료기관, 「지역보건법」에 따른 지역보건 의료기관 및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따른 사회복지시설, 또는 「노인복지법」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등에서 간호사로 근무한 경력
우대요건	○ 치매관련 업무 종사 또는 치매전문교육 이수자 ○ 운전면허 소지자(*실제 차량 운행이 가능한 자) ○ 정신전문간호사 자격증 소지자

□ 영상 기획 · 촬영 · 편집

임용예정부서	임용예정직급	선발예정인원	계약기간
홍보기획관	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	1명	2년

주요업무	○ 영상활용 시정홍보 추진 ○ 영상 기획, 시나리오 구성, 촬영 및 편집 등 제작 ○ 영상콘텐츠 모니터링 및 분석 등 ○ 그 밖에 부서장이 분장하는 사무
------	--

필요역량	○ 미러리스, ENG 운용 ○ 프리미어프로, 에프터이펙트, 포토샵 등 영상편집툴 활용 상급 ○ 기획 시나리오 구성 및 연출 가능
------	---

필요지식	○ 디지털 콘텐츠 제작 이해 ○ ENG, 미러리스 등 카메라 조작과 영상언어 이해 ○ 디지털영상편집, 소프트웨어 이론과 활용
------	---

응시 자 격 요 건	경력요건	○ 1년 이상 <u>관련분야 실무경력</u>이 있는 사람 【 관련분야 실무경력 】 ▶ 국가, 지자체, 공공기관, 언론사, 민간기관 등에서의 홍보용 영상 기획 · 촬영 · 편집 관련 실무 경력 * 강의경력, 본인이 개인사업자이거나 개인사업자에 소속된 경력은 불인정함
	우대요건	○ 영상 편집·촬영 관련 자격증 소지자 ○ 관련 분야 공모전 수상 경력 보유자 ○ 영상 기획·촬영·편집 관련 학과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

□ 지하수검침원

임용예정부서	임용예정직급	선발예정인원	계약기간
하수과	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	1명	2년

주요업무	○ 지하수, 지하수이용부담금에 관한 업무 ▶ 부과·징수(계획·결과 보고 및 운용실적), 체납고지서 및 안내문 발송 ▶ 체납처분(독촉, 재산압류 및 해제, 고시공고, 결손처리) ▶ 사용료 감면 등록 처리 ○ 지하수 사용량 검침에 관한 업무 ▶ 인정검침, 보조검침, 원격검침(수자원공사 설치 포함) ▶ 검침 민원 및 이의신청 처리(분납신청, 수용가 변경 등) ○ 지하수 관리카드 검침구역 신규 및 변경 ▶ 지하수 원격검침기 및 단말기 AS처리 및 관리 ○ 그 밖에 부서장이 분장하는 사무
------	---

필요역량	○ 현장 검침 및 계량기 확인 등 외근 업무 수행 능력 ○ 검침 결과 기록 및 요금 부과를 위한 정확한 업무 처리 능력 ○ 민원 응대 및 현장 상황에 대한 기본적인 대응 능력 ○ 반복적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책임감 및 집중력
------	---

필요지식	○ 하수도·지하수 사용료 부과 기준 및 관련 규정에 대한 기초 이해 ○ 검침 및 계량기 관리에 관한 기본 지식 ○ 요금 부과·징수 및 체납 관리 절차에 대한 이해 ○ 민원 처리 및 행정업무에 관한 기초 지식
------	--

응시 자격 요건	경력요건	○ 1년 이상 <u>관련분야 실무경력</u>이 있는 사람 【 관련분야 실무경력 】 ▶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 검침업무 경력
	우대요건	○ 워드프로세서 자격증 또는 컴퓨터 활용능력 자격증 소지자 ○ 운전면허 자격 소지자

□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공매

임용예정부서	임용예정직급	선발예정인원	계약기간
동안구 세무과	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	1명	2년

주요업무	○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(주·야간) ○ 영치 번호판 관리 (보관, 반환 등) ○ 체납차량 강제인도 및 공매 ○ 그 밖에 부서장이 분장하는 사무
------	---

필요역량	○ 공통 역량 공직윤리(공정성, 청렴성), 공직의식(책임감, 사명감), 고객지향마인드(공복의식) ○ 직급별 역량: 상황인식/판단력, 기획력 · 팀워크지향, 의사소통능력 · 조정능력 등 ○ 직렬별 역량: 전문성, 분석력, 사고력, 전략적 사고 등
------	---

필요지식	○ 체납차량 영치 관련 법령(지방세법,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등)에 대한 지식 ○ 원활한 행정업무를 위한 전산 처리 기본지식 ○ 운전 능력 및 민원 대처 능력 등
------	--

응시 자격 요건	경력요건	○ 1년 이상 <u>관련분야 실무경력</u>이 있는 사람 【 관련분야 실무경력 】 ▶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업무 근무경력
	우대요건	○ 운전면허 보통 2종 이상 소지자 ○ 컴퓨터 활용능력 자격증 소지자

[참고] 근무조건	○ 야간근무 및 야간운전이 능숙하여 현장업무가 가능하여야 함. ○ 신체 건강하고 주야간 근무가 가능하여야 함. ▶ 주간: 9시~18시 / 야간: 18시~24시 ○ 근무시간 : 주 5일제(월~목: 9시~18시, 금: 9시~12시) ※ 근무방법 및 근무시간은 근무명령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.
-----------	---

□ 행정업무지원(장애인전형)

임용예정부서	임용예정직급	선발예정인원	계약기간
동안구 민원봉사과	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	1명	1년

주요업무	○ 부동산실거래 신고에 대한 자금조달계획 및 증빙자료 검토 ○ 부동산 실거래 신고 처리(승인,보완,반려) ○ 부동산거래 검인 검토 및 처리 ○ 토지거래계약 허가 업무 ▶ 허가 서류 검토 및 허가증 교부 ▶ 허가목적(실거주 여부) 현장 확인 등 ○ 행정, 민원업무 및 부서 사무업무 수행 ○ 그 밖에 부서장이 분장하는 사무
------	--

필요역량	○ 공통역량: 공직윤리, 공직의식, 고객지향마인드 ○ 직급별 역량: 상황인식·판단력, 팀워크지향, 의사소통능력·조정능력 등 ○ 직렬별 역량: 민원상황 대응능력, 전산입력 및 문서정리를 위한 기초 실무능력
------	---

필요지식	○ 민원행정 처리 절차 및 관련 법령에 대한 기초 이해 ○ 공공기관 민원 응대 매뉴얼 및 서비스 기준에 대한 이해 ○ 문서 작성 및 관리에 필요한 행정 문서 작성 기초 지식 ○ 전산 시스템 활용을 위한 컴퓨터 활용 능력 (한글, 엑셀 등) ○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 보안 관련 기초 지식 ○ 서류 전산화 및 기록 관리에 대한 기본 이해
------	--

응시자격요건	경력요건	○ 지원요건을 충족하며,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【 지원요건 】 ▶ 「장애인복지법 시행령」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또는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4조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【 관련분야 실무경력 】 ▶ 국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, 법인 및 민간기업에서 행정, 사무, 민원업무, 공공일자리사업 분야 행정업무 보조 등 일반행정 실무경력 [※ 비사무직 업무(현장·제조·노무업무)는 실무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]
	우대요건	○ 전산관련 자격증 소지자(컴퓨터활용능력, 워드프로세서 등) ○ 컴퓨터 문서작성(한글·엑셀 프로그램 활용) 및 컴퓨터 활용이 가능한 자